

『구미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4년 10월 5일

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4년 10월 6일

라. 상정일자 : 2004년 10월 13일

제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김 경 배

나. 제안이유

현행 27개 읍·면·동사무소에서만 스티커를 판매하고 있어,
판매소 확대로 스티커 구입이 쉽고 편리하도록 개선이 요구되며,

대부분의 대형폐기물이 토요일 및 휴일에 배출되나 관공서의
토요휴무제 등의 시행으로 휴무일 스티커 구입이 불가능하여
토요휴무제 확대 등에 따른 개선이 절실하고,

또한 10ℓ, 20ℓ 용량의 규격봉투에 대하여 옅은 녹색을 넣어
시민의 사생활이 보호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스티커 판매소 확대 : 27개 읍·면·동 ⇒ 840개 봉투판매소
- 스티커 판매에 따른 판매가의 10%이내의 이윤부여
- 쓰레기봉투(10ℓ, 20ℓ)에 옅은 녹색 투입
-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세분화

라. 참고사항

- 관리지침 :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(2003. 7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정 석 광

- 본 조례안은 기존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, 현행 읍·면·동사무소에서만 판매되고 있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를 기존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확대운영 함으로써, 관공서의 토요일무제 등 휴무일 시민들의 스티커 구입의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사생활 침해 문제점 등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이며,
- 주요 내용으로는
 - 스티커 판매소 확대 : 27개 읍·면·동 $\Rightarrow$ 840개 봉투판매소
 - 스티커 판매에 따른 판매가의 10%이내의 이윤을 판매소에 부여
 - 쓰레기봉투(10ℓ, 20ℓ)에 얇은 녹색 투입으로 시민 사생활 침해 방지
 -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스티커 구입에 따른 구입자와 판매자간의 논쟁을 사전 차단토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서,
-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,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